

Article 8. Each Party shall use its best efforts to facilitate entry to and exit from its territory of personnel and equipment of the other country, engaged on or used in projects and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9. 1.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of a nonproprietary nature derived from the cooperative activities conduct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made available, unless it is agreed otherwise under specific circumstances, to the world scientific community through customary channels and in accordance with the normal procedures of the participating agencies.

2. The disposition of patents, designs and other industrial property arising from the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will be provided for in the implementing arrang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3.

Article 10.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judice other arrangements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Parties.

Article 11.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upon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for five years. It may be modified or extended by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2.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r duration of any arrangements made under it.

DONE at Seoul, Korea, this twenty-second day of November 1976, in duplicate, in the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both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ICHARD L. SNEIDER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 JIM PARK

[KOREAN TEXT — TEXTE CORÉEN]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 및 기술협력이 과학과 기술의 상해를 향상시키고 또한 양국간의
우호의 유대를 강화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양 당사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2. 그러한 협력의 주요목적은 아이디어·정보·기능 및·기술을 교환하고
또한 상호 이익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협력하기 위한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함에 있다.

제 2 조

이 협정에서 의도하는 협력에는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과학자 및
기술전문가의 교류·합동 세미나 및 회합의 개최·기초 및 응용과학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사업의 수행과 상호 합의하게 되는 기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이
포함된다.

제 3 조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양 당사국은 적당한 경우에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소 및 양국의 기관, 기관과 상사간의 직접 접촉 및 협력의 발전과 또한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수행을 위한 그들간의 시행 양정의 체결을 장려하며 촉진한다.

제 4 조

제 3조의 과학자 기술전문가,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또는 국제기구는, 합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적절한 경우에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과 계획에 참가하도록 양 당사국에 의하여 요청될 수 있다.

제 5 조

시행 양정에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 참가기관, 기구 또는 기업은 그 참가비용 및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에 종사하는자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 6 조

협력활동은 양국의 적용법규에 따라 행하여지며 또한 자국의 가용성에 따른다.

제 7 조

양 당사국의 대표는, 이 협정의 시행을 모의하고 촉진하며 또한 공동 이익이 되는 계획·사업 및 활동의 진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합한다. 특수문제를 모의하기 위하여 전문가단을 임명할 수 있다.